



안사회계법인 · 829-7575

세계재경저널 Answer

eAnSe.com ··· 2022/4/25

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·計·經營 戰略

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·증여세 과세제외 범위

개념, 과세		과세제외금액, 계산방법, 이유
상속 · 증여재산		종교, 자선, 학술 등의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+법인주식금액
동일법인 주식 출연시 과세제외 범위 판단	주식범위	당해 공익법인에 출연한 법인 주식 +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주식 + 다른 공익법인의 특정법인기준주식 보유분
	5%한도	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 ② 동일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일반 공익법인 : 5% 초과부분은 상속 · 증여과세
	5%~10%	① 5% 초과주식으로 운용소득의 일정비율(80%) 이상 공익목적 사용 ②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 1% 이상 공익사용 ③ 이사의 구성요건 충족(특수관계자 20% 이내 등) 위 3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5% 초과해도 과세 제외함
	10% 한도	일반적인 법인의 경우
	20% 한도	의결권 행사하지 않을 것 + 자선 · 장학 · 사회복지 목적
동일법인의 다른 주주 등		동일법인의 특정주주집단이 5% 또는 10%를 출연한 상태이면, 다른 주주집단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도 상속 · 증여세 과세함
다른 주주의 다른 공익법인 (운용소득 80% 이상 사용조건)		동일법인의 갑 가족 등 특수관계자의 갑 공익법인 5% 출연 + 을 가족특수관계자의 을 공익법인 5% 출연가능(소득의 80% 사용 조건으로 상속 · 증여세 없음)